

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

1.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
2. 정보제공의 목적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
3. 동의서 유효기간: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
4. 등록의무자(정보제공 요청자)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
5. 동의자(등록의무자 포함) 인적사항

관계	동의자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연락처	제공 정보		정보 제공에 동의함 (서명 또는 인)
				금융거래	부동산	
본인		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8조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,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,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참고 사항

- 동의여부: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중 제공을 원하는 부분의 "√" 표시를 하십시오
- 동의 확인: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

정보제공 범위

- 재산 등록·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(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)
- 부동산 보유·등기 및 과세정보(지적, 건축,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)
-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: 재산 등록·신고기간 중

정보 제공 금융기관명

-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-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
 -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
 -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-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- 그 밖에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제회·공단 등
-